

요금수취인부담 담보금 국고귀속 안내

[서울용산우체국 공고 제2019-37호]

서울용산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요금수취인부담 담보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(국고에의 귀속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 예정임을 공고합니다.

- 공 고 사 항 -

1. 국고귀속일 : 2019. 10. 2.

2. 국고귀속대상

고객명	보관금명	금액	수납일자	비고
(주)해태제*	요금수취인부담 담보금	35,200	2004.8.30.	
(주)오리*	요금수취인부담 담보금	48,400	2008.1.17.	

o 국고귀속 범위 :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요금수취인부담 담보금
(환급청구가 없이 5년이 경과한 담보금)

3. 환급기간 : 2019. 9. 2. ~ 2019. 10. 1.

4. 환급장소 : 서울용산우체국 영업과

5. 환급청구 시 구비서류

- 가. 정부보관금 수령증서 1부(분실시 인감날인한 분실확인각서 1부)
- 나. 정부보관금 환급 신청서 1부(계약자 인감 날인)
- 다. 계약자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
- 라. 실명확인증표(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개인: 주민등록증)
- 마. 사업자명의 변경 및 사업자번호 변경시 등기부등본 1부
- 바. 계약자 본인 아닌 경우는 아래 서류 추가
 - 1) 위임장(계약자 인감 날인, 오시는 분 신분증) 1부
 - 2) 인감증명서 1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용산우체국 영업과(02-6966-0825)로 연락 바랍니다.

2019년 9월 2일

서울용산우체국장